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12월 5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12월 5일

3. 제안이유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안 제4조)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안 제6조)
- 수탁자를 선정할때에는 공개모집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안 제7조)

-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위·수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2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안 제14조)
-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5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하수처리장을 수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업체의 수행능력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수탁자의 업무로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수질오염 방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였고 위·수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